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1

제출년월일 : 1997. 1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대형공사등 터키공사 심의업무가 '97년도부터 지방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위원회 심의범위를 보완하여 기술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함과
- 대통령령 제15441호('97. 7. 21)로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설계의 부실방지 및 현실성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조정으로 심의대상공사 완화
2. '97년도부터 대형공사 등 터키공사 심의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른 지방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조정
3. 심의위원회가 건설기술심의에 대해 사전심의 제도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4. 심의위원회 사전 서류확인 및 심사에 따른 수당관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설계심의 내실화
5. 기술심의 신청시 수수료 납부 의무화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13조, 제 19조, 제38조의7, 제39조

□ 기타참고자료 (붙임)

현행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문)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1항의”를 “제5조제2항의”로 한다.

제2조 제3호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도내의 전문가 중에서”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업무담당 과장중에서, 서기는 건설국 5급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건설기술심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업무주관 계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에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제10조 제1호중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을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5항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제85조제5항,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로 하고, 동조 제1항 9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놓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7일 이내

②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심의중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현장조사시에는 심의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 (심의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14조 제2항중 “7인이상 12인”을 “5인이상 30인”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석수당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일비 및 여비 :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사전심의수당 : 설계심의 1안전당 20,000원 이하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수수료) ① 건설공사 설계등을 심의요청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

표19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의신청시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5호 서식)

사전심의검토의견서

◦ 심의안건명 :

◦ 의 견 :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